



# 2023 세법강의 추록

이철재·정우승·유은종 공저 ·세경사 ·2023년 6월 8일 현재

- 이 추록은 세법강의 제35판 1쇄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.
- 이 추록은 책 출간 이후 개정된 세법의 내용과 그 밖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
- 책 본문 사이즈와 맞게 편집되었으니 잘라서 사용하세요.

## I. 「법인세법」

### 1. 개정사항

#### ▣ 개정내용

종 전					개 정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통합투자세액공제율				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율 상향				
구 분	기본공제(%) (당기분)			추 가 공 제	구 분	기본공제(%) (당기분)			추 가 공 제
	대	중 견	중 소			대	중 견	중 소	
일반	1	5	10	3	일반	3	7	12	10
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	신성장·원천기술	6	10	18	
국가전략기술	8	8	16		국가전략기술	15	15	25	

[개정이유]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세제지원 강화

[적용시기] 2023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◆ 교재 수정사항

☞ p.법인-446 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액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

① + ② **개정**

① 기본공제 금액 :  
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× 3%  
 (중견기업 7%, 중소기업 12%). 단,  
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 
 6%(중견기업 10%, 중소기업  
 18%),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  
 자하는 경우에는 15%(중소기업 25%)

② 추가공제 금액 :  
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 
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 
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  
 는 금액 × 10%. 단, 추가공제 금액  
 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 
 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함

2. 그 밖의 수정사항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법인-118	상 19	④ ~ 익금불산입 13,500,000원	④ ~ 익금불산입 36,000,000원
법인-436	하 1	33,600,000	32,400,000

## II. 「소득세법」

### 1. 개정사항

#### ▣ 개정내용

2023. 4. 11.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2023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40%에서 80%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세법강의 소득세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

#### ▣ 교재 수정사항

☞ p.소득-194 상 6~7행의 내용을 다음의 표로 대체하세요.

(가) 대중교통 이용분	대중교통 이용분 × 40%(2023년 이용분은 80%)
(나) 전통시장 사용분	전통시장 사용분 × 40%

☞ p.소득-194 하 1~18행의 내용(\* 포함)을 다음의 표로 대체하세요.

(바) 최저사용금액 차감분*	최저사용금액 × 공제율*			
	* 최저사용금액에 적용하는 공제율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적용함. 따라서 15%, 30%, 40%, 80%의 순서임.			
	공제율	차감 순서	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	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
	80%**	④	대중교통 이용분	대중교통 이용분
	40%	③	전통시장 사용분	전통시장 사용분
(바) 최저사용금액 차감분*	30%	②	직불카드 등 사용분, 도서 등 사용분	직불카드 등 사용분
	15%	①	신용카드사용분	신용카드사용분
** 2023. 1. 1.부터 2023. 12. 31.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적용함. 예) 갑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총급여액(단위 : 만원) 신용카드사용분 1,000, 직불카드 등 사용분 1,000, 전통시장 사용분 1,000, 대중교통 이용분 1,000, 총급여액 10,000 ➡ 최저사용금액 : $10,000 \times 25\% = 2,500$ 최저사용금액 차감분 $1,000 \times 15\% + 1,000 \times 30\% + 500 \times 40\% = 650$				

☞ p.소득-195 하 1~12행의 내용을 다음으로 대체하세요.

구 분	추가한도
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	추가공제액 : Min[①, ②] ① 기본한도초과액 ② 대중교통 이용분의 80% + 전통시장 사용액의 40% + 도서 등 사용분의 30% → 300만원 한도
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	추가공제액 : Min[①, ②] ① 기본한도초과액 ② 대중교통 이용분의 80% + 전통시장 사용액의 40% → 200만원 한도

**개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강화**

- 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도서 등 사용분에 2023. 7. 1. 이후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도록 하였다.
- ② 기본공제한도 및 추가공제한도를 단순화하여 2023. 1. 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.
- ③ 2023년의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%에서 80%로 상향조정하였다.

☞ p.소득-197 상 2~하 1행의 내용을 다음으로 대체하세요.

(1) 공제가능금액

구 분	사용액	공제율	공제액
대중교통 이용분	1,000,000	80%	800,000
전통시장 사용분	6,000,000	40%	2,400,000
도서 등 사용분	3,000,000	30%	900,000
직불카드 사용분	13,000,000	30%	3,900,000
신용카드 사용분	3,000,000	15%	450,000
최저사용금액	9,000,000*1)	15%(30%)	2,250,000*2)
합 계	26,000,000		6,200,000

\*1)  $36,000,000 \times 25\% = 9,000,000$

\*2)  $3,000,000 \times 15\% + 6,000,000 \times 30\% = 2,250,000$

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적용하므로 3,000,000원은 15%, 6,000,000원은 30%의율을 적용한다.

(2)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

① 기본공제액 : Min[㉠, ㉡] = 3,000,000

㉠ 6,200,000

㉡ 한도 : 3,000,000

② 추가공제액 : Min[㉢, ㉣] = 3,000,000

㉢ 기본공제 한도초과액 : 3,200,000

㉣ 공제액 : 대중교통 이용분 × 공제율 + 전통시장 사용액 × 공제율 + 도서 등 사용분 × 공제율  
 $= 800,000 + 2,400,000 + 900,000$   
 $= 4,100,000$

- ㉔ 추가공제한도액 : 3,000,000 한도
- ㉕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 : 6,000,000

☞ p.소득-205 하 16행~p.소득-206 상 4행의 내용을 다음으로 대체하세요.

(1) 공제가능금액

구 분	사용액	공제율	공제액
대 중 교 통 이 용 분	3,000,000	80%	2,400,000
전 통 시 장 사 용 분	22,000,000	40%	8,800,000
직 불 카 드 사 용 분	4,000,000	30%	1,200,000
신 용 카 드 사 용 분	5,000,000	15%	750,000
최 저 사 용 금 액	20,000,000*1)	15%(30%, 40%)	6,350,000*2)
합 계	26,000,000		6,800,000

\*1)  $80,000,000 \times 25\% = 20,000,000$

\*2)  $5,000,000 \times 15\% + 4,000,000 \times 30\% + 11,000,000 \times 40\% = 6,350,000$

(2)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

① 기본공제액 :  $\text{Min}[\text{a}, \text{b}] = 2,500,000$

㉔ 6,800,000

㉕ 한도 : 2,500,000

② 추가공제액 :  $\text{Min}[\text{a}, \text{b}] = 2,000,000$

㉔ 기본공제 한도초과액 : 4,300,000

㉕ 공제액 :  $\text{전통시장 사용액} \times \text{공제율} + \text{대중교통 이용분} \times \text{공제율}$   
 $= 2,400,000 + 8,800,000$   
 $= 11,200,000$

㉔ 추가공제한도액 : 2,000,000 한도

③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 : 4,500,000

## 2. 그 밖의 수정사항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소득-152	상 4	식사대 2,400,000원(월 200,000원)	식사대 1,200,000원(월 100,000원)

☞ p.소득-144 하 3~5행을 다음의 표로 대체하세요.

구 분	총수입금액	필요경비	소득금액	세율	원천징수세액
연 금 외 수 령 한 금 액	4,000,000	-	4,000,000	15%*1)	600,000
서 화 양 도 대 가	200,000,000	180,000,000*2)	20,000,000	20%	4,000,000
계	204,000,000	-	24,000,000		4,600,000

### Ⅲ. 「부가가치세법」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부가-190	하 10	3.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	3. 2021년 제2기부터 2023년